

— 구미시 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,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조사·연구하여 시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미시 행정동우회 육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마련.

3. 주요내용

-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,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등을 조사·연구하여 시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구미시 행정동우회를 지원·육성(제1조)
- 동우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(제2조)
 -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·자문
 - 시정의 시책,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
 -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
 -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 등
-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(제3조,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
- 포항시, 성남시, 충주시, 전주시조례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하고 “건의·심의” 조사를 하기 위해 구미시행정동우회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임.
- 포항시를 비롯한 몇 개 도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
- 광역시단위에서는 예산지원 등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하여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.